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담당 IT·핀테크전략국 담당자 강준모 연락처 02-3145-7419
요청대상 행위	□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(방화벽 등)을 망연계 솔루션(스트리밍)을 통해 내부망의 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
판단	□ 물리적 망분리 영역의 정보보호시스템(방화벽, NAC 등)으로부터 망연계 솔루션(외부에서 내부로 단방향 통신만 가능)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종 로그정보 등 침해 관련정보를 내부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전송할 경우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.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전산실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보 유출·자료파괴 등 해킹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(전자금융감독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), ○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통신망과 서비스번호(port)를 통해
	예외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(시행세칙 제2조의2제2항제2호) □ 악성코드 등 침해행위에 대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외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생성된 각종 침해 관련정보를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
	○ 특히, 침해 관련정보의 전송 과정에서 침해위험 방지 통제로서 일반적 으로 샌드박스 기반*의 악성코드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.
	*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별도로 지정된 보호 영역에서 실행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내부 시스템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
	 다만, 내·외부망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외부통신망과의 분리·차단 및 접속금지 의무를 반영한 망분리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

- **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